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10. 12, 건설교통부령 제34호)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기간을 자격과 등급에 따라 1주이상, 2주이상 및 3주이상으로 차등화하여 정함(제3조)

나. 건설기술자 및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과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제4조의4,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40조의2, 별표 2 내지 별표 4, 별표 17)

다. 1억5천만원이상 3억원미만의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자격심사방식에 의하여 5인 내지 7인을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3억원이상의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자격심사방식에 의하여 5인 내지 7인을 선정한 후 이들중에서 기술제안서평가방식에 의하여 2인 또는 3인을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함(제13조)

라. 1억5천만원이상의 건축설계의 경우에는 사전자격심사방식에 의하여 5인 내지 7인을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거나 현상공모방식에 의하도록 함(제13조의2)

마. 5억원이상의 설계용역과 책임감리용역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내역을 동시에 입찰하게 한 후 기술평가결과가 우수한업체순으로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3)

바. 부실측정의 대상을 1억5천만원이상의 설계용역 및 책임감리용역, 50억원이상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로 함(제13조의5, 별표 8)

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 및 주요구조물이 포함된 공사에 관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감리할 수 있는 설계감리자는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를 3인 이상 보유하도록 함(제13조의8)

〈건설교통부 제공〉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기간)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 및 특급기술자 : 1주 이상

2. 기사 1급 · 기사 2급 · 기능사 1급 · 기능사 2급 · 기능사 또는 기능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 고급기술자 및 중급기술자 : 2주 이상

3. 초급기술자 : 3주이상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감리원의 관리) ① 영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현황 신고서와 감리원경력 또는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건설감리협회는 감리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건설감리협회는 제1항의 감리원경력 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당해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요건등) 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정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기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

②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4.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종류 및 등급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건설감리협회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교육훈련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건설기술자격력수첩 또는 감리원수첩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 확인하여야 한다.

⑦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교육비를 교육훈련을 받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장에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건설기술자는 법 제6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격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격력변경신고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력확인원을 첨부하여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격력수첩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③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자격력수첩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격력수첩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자격력수첩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격력수첩발급(갱신·재발급)신청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확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격증명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한다.

⑥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자격력수첩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건설기술자격증명서 및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당해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⑦ 발주청은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경력수첩에 참여사업명·실제근무기간·직위 및 담당공종 등을 기록 확인하여야 한다.

⑧ 발주청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입력한 자기디스켓과 이를 출력한 서류 1부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사용자의 보고의무) 건설관련업체는 법 제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입력한 자기디스켓과 이를 출력한 서류 1부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① 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2의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에 의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 발주청은 당해 위반행동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6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회수”라 함은 3회를 말한다.

제4조의5(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및 주의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시정지시 및 경고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

제5조제3항중 “건설부장관이 정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본문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전문기관의 검토기간 및 성능기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검토기간”으로 한다.

제11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신기술지정증서) ① 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 신기술지정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이를 재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장에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기준) ①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기준은 별표 3의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기준에 의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 발주청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기간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의3(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시정지시) 법 제2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설계 등 용역성과가 설계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및 주의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시정지시 및 경고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

제12조의4(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① 법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4의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에 의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 발주청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의5(설계 등 용역업자의 참가제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설계 등 용역업자로부터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분야별 기술자보유현황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고 발주청이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반기별로 선정하여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6(설계 등 용역의 하도급의 범위 및 내용) ① 법 제20조의7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조사·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지질 및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3. 제도 및 도면작성 등 작업
4. 건설공사의 수량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5. 기타 발주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등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당초 도급 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업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에 관하여 발주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설계 등 용역업자는 설계 등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의 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비가 1억5천만원이상 3억원미만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억5천만원이상 5억원미만인 실시설계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5인 내지 7인을

선정한다.

2. 용역비가 3억원이상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5억원이상인 실시설계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5인 내지 7인을 선정한 후 이들 중에서 별표 5 제2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2인 또는 3인을 선정한다. 다만, 많은 업체의 참여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직접 별표 5 제2항의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2인 또는 3인을 선정한다.

3. 용역비가 1억5천만원이상인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2인 또는 3인을 선정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또는 부실설계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용역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용역계약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계 등 용역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설계 등 용역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건설감리협회는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감리용역계약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용역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건설감리협회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당해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건축설계자의 선정) ① 발주청은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5인 내지 7인을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축공사가 특별히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현상공모에 의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별표 7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경기작품을 평가하여 설계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의3(건설·기격분리입찰) 발주청은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용역비가 5억원이상인 설계 등 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5인 내지 7인을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5 제2항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3인의 업체를 선정한 후 최우수업체부터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2. 설계비가 5억원이상인 건축설계의 경우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3인의 업체를 선정하여 최우수업체부터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3. 용역비가 5억원이상인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시한 기술평가기준에 의하

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3인의 업체를 선정하여 최우수업체부터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제13조의4(준공신고서의 첨부서류) 영 제38조의9제1항제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구조계산서
2.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제13조의5(건설업자 등의 부실별점 관리) ①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다음의 설계 등 용역·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총용역비 1억5천만원이상의 설계 등 용역
2. 총용역비 1억5천만원이상의 책임감리
3.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50억원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 50억원이상인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별점을 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총괄표 및 부실별점 적용결과를 매번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설감리협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한국기술사회 또는 측량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6(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내용 및 부실별점의 관리 등은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별점관리기준에 따른다.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설감리협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한국기술사회 및 측량협회는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설계 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별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7(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법 제21조의5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33호서식에 의한 점검요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자료를 점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공무원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의8(부실시공현장의 관리) 영 제38조의11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시공현장표지판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의9(설계감리자 지정기준)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계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이 있는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3인이상을 보유한 설계 등 용역업자로서 해당전문분야의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설계 등 용역업자

2. 영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로서 해당전문분야의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외국인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설계등 용역업자

② 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설계등 용역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감리자 지정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설계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설계감리자지정증을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설계 등 용역업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감리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설계 등의 심의제외공사) 영 제39조제3항제5조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건설공사
2. 기존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건설공사
3. 도로확장공사. 다만 터널, 길이가 200미터이상인 교량 또는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미터이상인 교량을 건설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산·하수도시설공사. 다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2만톤이상이거나 정수시설을 건설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다.

5. 25층이하로서 2천세대미만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단지조성공사. 다만, 임해공단건설공사가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포장도의 덧씌우기 공사

8. 준설공사

9. 사방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용 도로공사

10. 굴토 또는 정지 등 단순 토공사

11.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5층이하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하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공사

제4장의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설계도서작성기준) ① 설계 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교량 등 구조물을 설계할 때에는 설계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설계보고서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고시된 신기술의 적용가능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각종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유지관리계획서 및 소요예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작성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의3(설계도서의 검토)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의 내용이 시공가능여부

3.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제14조의4(시공상세도면의 작성) ① 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을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5(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 등) 설계 등 용역업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본문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본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호의 공사에 대하여도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38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별표 2”를 각각 “별표 9”로 하고, 동조 2항 중 “별표 3”을 “별표 10”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의 작성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④ 발주자는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험을 공사착공일부터 매년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표 12의 검사시험 점검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적정성확인을 한 연도에서 검사시험을 따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39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을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별표 5와”를 “별표 13과”로 한다.

제20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건설공사허가관세”를 “자”로 하며, 동조 제6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별표 6”을 “별표 14”로, “건설공사허가관서의 장”을 “자”로 한다.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은 연 1회이상 실시하되, 준공 2월전 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결과는 별표 14의 품질시험적정성확인점검요령에 따라 작

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품질시험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연도에 확인요청을 할 건설공사의 개요를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품질시험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품질시험적정성확인의뢰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 영 제46조의2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① 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에 의하여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2. 공사시공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3. 공사품질의 적정성

4. 인접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② 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안전관리계획서) ① 영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② 발주자 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완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즉시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시정조치결과보고)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자는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본문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4조 본문중 “별표 7과”를 “별표 15와”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을 “(건설자재의 납품서)”로 하고, 동조중 “표준납품서”를 “납품서”로,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43호서식 내지 별지 제47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은”을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48호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건설업자 등이”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로 한다.

제27조 본문중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49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50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비고 제3호”를 “비고 제2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51호서식”으로, “별지 제19호

서식”을 “별지 제52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제53호서식”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54호서식”으로 한다.

제6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기타 구조물공사) 영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이라 함은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쓰레기소각로,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을 말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단순공중 반복공사) 영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제14조제7호 내지 제10호의공사
2. 구조물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공사
3. 창고·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공사
4.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책임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통합감리의 기준) ①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의 책임감리원에 대하여 영 제52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공사의 총 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통합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2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인 특급감리원외에 특급감리원 1명을 더 배치하여야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감리비의 예치 등) ① 영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비는 당해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당해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치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③ 당해 사업시행자는 감리비를 분기별로 나누어 감리전문회사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중 “발주기관의 장에게”를 “발주청에”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발주기관의장”을 각각 “발주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리전문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선정평가시 제출한 참여기술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감리원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영 제52조제1항제13호”를 “영 제52조제1항제14호”로,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에 라목 내지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설계도서의 검토

마.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바. 현장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발주기관의 장”을 각각 “발주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건설부장관은 감리원이 그업무를”을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이 책임감리와 관련된 업무를”로 한다.

② 책임감리원은 월별 또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책임감리원의 경력 등) ① 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은 당해 공사분야에서 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다음 각호의 기간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총예정공사비 200억원이상인 공사의 책임감리원 : 5년

2. 총예정공사비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3년

3. 총예정공사비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3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의 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이상인 감리원이 당해 공사분야의 계획·설계·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분의 1을 경력연수에 산입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 영 제54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건설관련업무에 20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감리전문회사,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8.0281. 대표자에 대한 영 제54조제2항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인의 임원 또는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 및 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이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별지 제56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현황과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건설기술자격증명서

가. 교육이수사실이 기재된 자격증 사본(자격소지자의 경우에 한한다)

나.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다.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엔 한다)

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력확인원

5. 당해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6.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7.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을 소유하거나 전세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8. 별표 16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9. 건축사면허증 사본(감리원중에 건축사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0.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법인의 경우에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을 비교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법 제29조”를 “법 제28조의3 및 법 제29조”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감리전문회사등록증의 교부 등)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이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36조제1항제4호의 서류 사본 1부를 건설감리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감리원수첩의 교부 및 관리) ① 건설감리협회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경력확인서 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당해 감리원의 기술자격·학력 및 경력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9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에 대한 감리원수첩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감리원수첩교부신청서를 건설감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감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수첩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에 의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감리원수첩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2호서식의 감리원수첩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2호서식의 감리원수첩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이 감리원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감리원수첩제교부신청서를 건설감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감리원이 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를 받거나 당해 감리전문

회사에 퇴직한 때에는 감리원수첩을 회수하여 건설감리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시 건설기술자격증명서 또는 감리원수첩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 관계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건설감리협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당해 감리전문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38조제1항중 “법 제28조제2항”을 “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으로, “별지 제28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사항(휴업·폐업)변경신고서”를 “별지 제64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신고서”로, “건설부장관”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무실면적의 증감(위치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장비의 증감을 말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① 감리전문회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1.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2.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훼손한 등록증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 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받는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17의 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법 제3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법 제3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17의 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40조의3(등록취소 등의 공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감리전문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33조제1항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책임감리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건설감리협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감리협회는 제3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감리원경력확인서에 제1항의 부실감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등) 발주청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확인 및 검토사항 등을 소홀히 한 경우 시정지시후 경고

2. 기록유지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시정지시후 주의

제42조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건설공사기준”을 “건설기준”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건설공사기준”을 각각 “건설기준”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 건설공사감독자는 영 제56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별표 18의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일지·관급자재수불부·근무상황부 등 건설공사감독자가 사용하는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66호서식 내지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중 “발주기관의 장”을 각각 “발주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 제83호서식”으로,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 제84호서식”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별로 평가한 평점합계에서 건설폐자재의 물량과 재활용율이 다음 표이상인 때에는 1.5 점을 가산한다. 다만, 동일현장에서 2이상의 건설폐자재가 발생한 때에는 그 물량과 재활용율이 각각 다음 표의 수치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부 피	중 량	재활용률
토사 및 기타 폐자재	1,000m ³ 이상	1,600톤이상	60%이상
콘크리트덩이	500m ³ 이상	1,000톤이상	50%이상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200m ³ 이상	400톤이상	35%이상

⑤ 발주청은 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평가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시공평가총괄표와 별지 제83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시공평가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부실별점 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설계 등 용역의 평가)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의 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3인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실시한다.

② 설계 등 용역의 평가는 설계 등 용역이 완료된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수행중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완료시 실시하는 평가결과에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③ 설계 등 용역평가의 기준은 별지 제86호서식의 설계용역평가표에 의한다.

제46조 본문중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 제87호서식”으

로,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건설부장관”을 “다음연도 2월말 까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6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최근 3년이내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건설업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매 회수마다 평균점수에서 0.5 점씩을 감산할 것

6.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별점을 준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누계부실별점에 따라 다음 각목의 점수를 평균점수에서 감산할 것.

누계부실별점	감산점수
50점이하	1
50점초과 100점이하	2.5
100점초과	5

7. 품질경영촉진법 또는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점수를 평균점수에 가산할 것.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증단계	가산점수
한국산업규격 A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9001	0.9
한국산업규격 A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9002	0.6
한국산업규격 A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9003	0.3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시공능력평가의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 ① 영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는 용역업자별로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평가결과를 평균한 점수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로 평가한다.

1. 최근 3년이내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매 회수마다 평균점수에서 0.5점씩을 감산할 것.

2. 건설기술개발투자비를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금액이상을 당해영도에 투자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 0.5 점을 가산할 것

3.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별점을 준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6호의 기준에 따라 감산할 것

4. 품질경영촉진법 또는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품질보증체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7호의 기준에 따라 가산할 것.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용역능력평가의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제1항제1호중 “전체대상 건설업자”를 “시공능력평가대상 건설업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최근 5년간”을 “최근 3년간”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7. 최근 1년간 재해율이 전국 평균재해율미만일 것.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우수용역업자의 지정) 영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최근3년간의 평가평점이 평균 90점이상이고, 전체용역능력평가대상 용역업자의 5퍼센트이내의 범위에 들어야 한다.

[별표9]을 [별표 18]로, [별표 4]내지 [별표 8]을 각각 [별표 12]내지 [별표 16]으로, [별표 3]을 [별표 10]으로, [별표 2]를 [별표 9]로, [별표 1]을 [별표 5]로 한다.

[별표 1]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종전의[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내지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종전의 [별표 2])및 [별표 10](종전의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종전의 별표 5)제3호중 “정부가 고시하는 노임단가”를 “관련협회가 고시하는 노임단가”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종전의[별표 7])및 [별표 16](종전의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종전의 [별표 9])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내지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 제73호서식]내지 [별지 제82호서식]으로,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 제87호서식]으로, [별지 제30호서식]내지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83호서식]내지 [별지 제85호서식]으로,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제65호서식]으로,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 제64호서식]으로,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제58호서식]으로,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제57호서식]으로,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제55호서식]으로, [별지 제15호서식]내지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48호서식]내지 [별지 제54호서식]으로, [별지 제11호서식]내지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43호서식]내지 [별지 제46호서식]으로, [별지 제7호서식]내지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38호서식]내지 [별지 제41호서식]으로,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내지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종전의[별지 제5호서식])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내지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서식]내지 [별지 제10호서식]중 “제29호제4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내지 별지 제46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4호서식)중 “표준납품서”를 각각 “납품서”로, 용지규격을 표시한 “210mm×297mm”를 각각 “148mm×210mm”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9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6호서식)중 “제28조”를 “제27조”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7호서식)중 “건설기술법관리법 제28조”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9호서식)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1호서식)중 “신고인(인)을 “신청인(서명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7호서식](종전의[별지 제26호서식])및 [별지 제58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서식]내지 [별지 제6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서식](종전의[별지 제28호서식])및 [별지 제65호서식](종전의[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내지 [별지 제7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종전의[별지 제34호서식])내지 [별지 제82호서식](종전의[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자의 신고기간에 관한 특례) 1996년 5월31일이전에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변경신고대상을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건설기술자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6월30일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3조(종전의 교육기관에 관한 경고조치)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업무를 대행하여 온 건설기술교육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설계 등 용역업자로 참가제한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초의 공고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0월31일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5조(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2)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제4조의4 관련)

위반 행위	해당 법 조문	업무 정지 기간
1.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한 때	제6조의4제1항 제1호	12월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제6조의4제1항 제2호	2월
3.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되었거나 공중에 위험을 끼친 때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제6조의4제1항 제3호	8월
가.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어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 위해 끼친 때		6월
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거나 또는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합을 초래한 때		4월
다.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 주요시설물의 안전에 지정을 초래하는 등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4월
라. 시공관리의 소홀로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4월
4. 시방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제6조의4제1항 제4호	1월
5.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6조의4제1항 제5호	2월
6.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때	제6조의4제1항 제6호	3월
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과를 조작한 때		1월
나. 시험회수·시험실면적·시험사례비 등이 규정보다 부족하여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월
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2월
7. 법 제2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때	제6조의4제1항 제7호	2월
8.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공을 계속한 때	제6조의4제1항 제8호	2월
9. 공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제6조의4제1항 제9호	2월
10.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우반하여 시공상태의 확인이나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때	제6조의4제1항 제10호	1월
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단계의 공사를 시공한 경우		1월
나.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단계의 공사를 시공한 경우		1월
11.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	제6조의4제1항	2월

위반 행위	해당 법 조문	업무 정지 기간
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	제11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정지기간준용
12.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제6조의4제1항 제12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정지기간준용
1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6조의4제1항 제13호	해당정지기간준용

(별표 5)

설계 등 용역입자선정 평가기준(제13조 관련)

1. 소규모 설계 등 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기 준			
			평 가 기 준			
1. 참여 건설기 술자	-해당분야 자격	50 (15)	○절대평가			
	-해당분야 경력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을 포 함한다)					
2. 유사 용역사 업수행 실적		7	○절대평가 -최근 3년간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3. 신용 도	-입찰참가 제한기간	10 (7)	○절대평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 • 없음(7점), 1~2개월미만(4점), 2~4개월미만(3점), 4~8개월미만(2점), 8개월이상(0점)			
	-재정상태 건설도	(3)	○절대 또는 상대평가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자산비율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4. 기술 개발및 투자 실적		10 (6)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전수(6점)			
	-개발실적					
	-투자실적	(4)	-최근 3년간 건설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의 전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4점)			
5. 현재 업무량 과 여유		15 (8)	○절대평가 -업무량 추정시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잔여과업 기간 : 3개월이상)도 건수에			
	-총괄 책임자					

평가 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기 준
6. 전차 용역과 관련	-분야별 책임자	(7)	포함 -1년간 1인기준 : • 건수 $[100 - (\text{건수} \times 10)] \times 1/2\% : 10$ 건초과는 0% • 금액 $[100 - (\text{금액} \div 2억 \times 10)] \times 1/2\% : 20억$ 초과는 0%
	-용역업자	8 (4)	○절대평가 -전차용역시행후 : 3년이내(100%), 3~5년이내(70%) 5~10년이내(50%), 10년이상(0%)
	-사업 책임 기술자	(4)	

〈비고〉

각 평가항목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하는 용역의 성격상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이를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로 되어 있는 경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으로 적정하게 산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절대평가방법에 의한다.
2. 상대평가는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정한다.
3.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분야의 용역 수행실적 및 경력을 평가한다.
4. 참여건설기술자가 발주청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용역을 감독 또는 관리하였거나, 이에 대한 설계심의 등과 관련한 업무에 참여한 경우는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평가대상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등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는 계약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6. 참여건설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의 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자마다 2.0~5점(1월~3월 : 2.0점, 3월~1년 : 3.0점, 1년 이상 : 5점)의 범위안에서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건설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하여 감점을 할 수는 없다.
8.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2년간 설계 등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자마다 0.5~2.5점(발주청 : 0.5, 장관 : 1.0점, 국무총리 : 1.5, 대통령 : 2.0점, 훈·포장 : 2.5점)의 범위안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1인이 2이상의 상훈을 받은 때에는 가장 높은 상훈에 대하여만 가점을 주어야 한다.
9. 공동도급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유사용역사업 및 전차용역실적과 입찰참가제한기간 등을 공동도급회사의 것과 합산하며, 세정상태건설도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각 공동도급회사의 평가결과의 평균으로 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업자의 실적부분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0.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한다.
11. 우수용역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3점 내지 5점의 범위안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
12. 부실용역업자에 대하여는 사전자격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에서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13.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자 중에서 사전자격심사를 위한 평가기준 및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점수에서 제13조의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감점한 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수업수행에 혼란한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찰참가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대규모 설계 등 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기 준								
1. 참여건설기술자	-해당분야 경력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을 포함한다)	30 (30)	○상대평가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배점 합계</th><th>사업책임 기술자</th><th>분야별 책임 기술자</th></tr></thead><tbody><tr><td>계</td><td>30</td><td>15</td><td>15</td></tr></tbody></table>	구분	배점 합계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계	30	15	15
구분	배점 합계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계	30	15	15								
2. 작업계획 및 수법	-수행계획 -수행방법 -신기술 등 도입 -기술자료 활용	70 (25) (30) (8) (7)	○상대평가 -과업수행 세부계획, 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계획 등 -작업수행 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인원투입 각종 영향평가,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외국의 최신 설계기술 등의 도입 활용, 설계 착안 사항 -보유장비, 프로그램 등								

〈비고〉

각 평가항목은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하는 용역의 성격상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이를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소규모 설계 등 용역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평가하되, 작업계획 및 수법의 세부사항 및 평가방법은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성격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많은 업체의 참여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용역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평가항목에 “소규모 설계 등 용역의 평가기준”의 평가항목중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현재 업무량과 여유” 및 “전차용역관련”의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배점범위를 150점으로 조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6)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제13조 관련)

평가 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1. 참여감리원	-자격 -해당분야 경력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을 포함한다)	60 (20)	○절대평가(자격, 해당분야경력), 상대평가 (해당분야용역참여실적)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평가 되되 상주감리원수 및 당해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 적용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배점 합계</th><th>상주감리원</th><th>비상주 감리원</th></tr><tr><th>계</th><td>60</td><td>24</td><td>24</td></tr><tr><th>자격</th><td>20</td><td>8</td><td>8</td></tr><tr><th>경력</th><td>40</td><td>16</td><td>16</td></tr></thead><tbody></tbody></table>	구분	배점 합계	상주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계	60	24	24	자격	20	8	8	경력	40	16	16
구분	배점 합계	상주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계	60	24	24																
자격	20	8	8																
경력	40	16	16																
2.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		10	○상대평가 -최근 3년간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																
3. 신용도		15	○절대평가																

(별표 7)

공공 건축공사 설계자 선정 평가기준(제13조의2 관련)

평가 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기 준
4. 업무 랑과 여유 5. 전차 용역과 관련	-업무정지 또는 부정 당업자 지정기간	(10)	-최근 3년간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예산회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 : 없음(10점), 2월미만(8점), 2월이상 4월미만(6점), 5월이상 8월미만(3점), 8월이상(0점)
	-재정 상태 건설도	(5)	○상대평가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자산비율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5	○상대평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의 참여감리원에 대한 나머지 과업참여기간 및 전수
	-용역업자	10 (5)	○절대평가 -전차용역시행후 : 3년이내(100%), 3~5년이내(70%), 5~10년이내(50%), 10년 이상(0%)
	-사업 책임 기술자	(5)	

<비고>

- 상대평가시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배정한다.
-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로 한다.
- 참여감리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용역수주실적 및 경력을 평가한다.
- 참여감리원이 발주청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은 공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대상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참여감리원의 보유현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감리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 해당감리원마다 3점(발주청 : 0.3점, 장관 : 0.5점, 국무총리 : 1점, 대통령 : 2점, 훈·포장 : 3점) 범위안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 다만, 1인이 2개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훈에 대하여만 가점을 주어야 한다.
- 참여관리원이 최근 3년간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감리원보다 1~5점(3월이하 : 2점, 3월초과 6월이하 : 3점, 6월초과 1년이하 : 4점, 1년초과 : 5점)의 범위안에서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감리원의 점수를 초과하여 감점을 할 수 없다.
- 감리용역사업 수행실적, 제재기간 및 누계평균부실점수등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는 건설감리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 사전자격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선정한 점수에서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 사전자격심사를 위한 평가기준 및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점수에서 제13조의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감점한 점수가 60점미만이거나, 사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찰참가 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공동도급으로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전차용역 및 유사용역사업 실적과 부정당업자지정 등의 인정은 공동도급상의 합산으로, 재정상태는 각 공동도급회사의 평가결과의 평균으로 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20%이하인 용역업자에 대한 실적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발주청은 평가항목·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을 당해 감리용역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평가 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기 준
1. 설계 의 예술 성·작 품성	-도시 계획 의 적합성	70 (10)	○상대평가 -도로교통계획에 대한 평가
	-작품의 예술성	(15)	-창의성과 독창성 평가
	-설계계획 의 합리성	(10)	-발주청 요구사항의 가능성 평가
	-주변환경 과의 조화	(5)	
	-경제성 및 공공성	(15)	-효율성 자체 사용계획(국산자재 우선)
	-도시환경 ·문화의 기여도	(5)	
	-대안의 제안	(10)	-기본설계에 대한 개선안 제안
2. 참여 기술자	-해당분야 경력	15 (10)	○상대평가
	-해당분야 용역 참가 실적	(5)	
3. 작업 계획 및 수법	-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15 (5)	○상대평가 -과업수행 세부계획, 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작업수행기법, 인원투입, 각종 영향평가,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비고>

각 평가항목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발주하는 설계의 성격상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평가항목, 배점범위 등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점수를 합리적 통계 등으로 적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절대평가 방법에 의하여 적용한다.
-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정한다.
- 참여건축사 또는 기술자의 보유현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건축사 또는 기술자가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의 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마다 0.5점에서 2점(1월~3월: 0.5점, 3월~1년: 1점, 1년이상: 2점)의 범위안에서 감점을 할 수 있다.
- 참여건축사 또는 기술자가 최근 2년간 조사·설계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 1인마다 0.5~2.5점(발주청 : 0.5점, 장관 : 1.0점, 국무총리 : 1.5점, 대통령 : 2.0점, 훈·포장 : 2.5점)의 범위안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1인이 2개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훈에 대하여만 가점을 주어야 한다.
- 가점들을 받은 설계참여 건축사 또는 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설계업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상훈을 받은 자를 다른 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다음 유사한 수행능력 평가시 이 분야의 평가점수에서 1점 또는 2점을 감점할 수 있다.
- 공동도급으로 설계를 수행할 경우 유사설계실적 및 전차설계실적과 입찰참가 제한기간 등은 공동도급회사와 합산하며, 재정상태건설도 등은 각 공동도급회사의 평가결과의 평균으로 한다.

(별표 16)

감리전문회사 보유장비기준(제36조 관련)

구 분	장 비 명	기 준
종합 및 건축감리 전문회사	○자동염분측정기	• 측정범위 : 0.001~1.0%이상 • 측정온도 : 0~40°C
	○콘크리트테스트햄퍼	• 전 원 : 전자 및 AC100V 겸용 • 측정범위 : 100~600 kg/cm ²
	○철근탐지기	• 페복두께 : 100mm이상, 철근간격 측정
	○도막두께측정기	• 측정방식 : 전자식 • 측정대상물 : 금속 및 비자성금속피막, 콘크리트피막
	○소음측정기	• 측정범위 : 0~1,000μm±1μm
	○목재함수율측정기	• 측정범위 : 6~30%
	○타일인발시험기	• 정밀도 : ±0.5% • 유입용량 : 1,500kg, 측정(Digital표시) • 인발강도 : 90kg/cm ²
토목감리 전문회사	○종합 및 건축감리전문회사 장비기준 중 소음측정기, 목재함수율측정기, 타일인발시험기를 제외한다	
설비 감리전문 회사	○풍압풍속계	• 측정범위 : 0~40m/s 0~500mmAq(정압) 0~100°C(온도)
	○초음파유량계	• 측정범위 : 0~6m/s(유속)
	○회전속도계	• 측정범위 : 0~10,000RPM
	○진동측정계	• 측정범위 : 3~5,000Hz(진동수) 0.03~20cm/s(속도)
	○소음측정기	• 측정범위 : 25~130dB

(별표 17)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40조의2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처분내용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제30조제1항 제1호	등록취소
2. 최근 3년간 5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제30조제1항 제2호	등록취소
3. 업무정지기간중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한 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한 때를 제외한다).	제30조제1항 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때	제30조제1항 제4호	등록취소
5. 임원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제30조제1항 제5호	등록취소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를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때	제30조제1항 제6호	12월 이내업무정지
7. 최근 1년간 동일 건설공사장에서 법 제21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3회이상 받은 때	제30조제1항 제7호	2월
8.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들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	제30조제1항 제8호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처분내용
된 때		
가. 부실시공으로 주요구조부가 붕괴되어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8월
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때		4월
다. 주요구조부의 부실시공으로 인근 주요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2월
9. 2년이상 책임감리의 실적이 없을 때(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미리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제30조제1항 제9호	
가. 3년이상 책임감리실적이 없는 때		등록취소
나. 2년이상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때		8월 이내 업무정지
10. 감리원자격이 없는 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제30조제1항 제10호	3월
11.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때	제30조제1항 제11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정지기간 준용
12.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제30조제2항 제1호	2월 이내 업무정지
1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제30조제2항 제2호	2월
14.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제30조제2항 제3호	6월
15. 책임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제30조제2항 제4호	
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 안전에 결함을 초래하게 한 때		2월
나.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 때		1월
16. 법 제2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0조제2항 제5호	2월
17. 소속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제30조제2항 제6호	1월
18. 법 제28조의6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속감리원을 2이상의 건설공사현장에 중복배치한 때	제30조제2항 제7호	1월

* 별표 규정 중 별표7의 규정은 본협회 회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정이고, 기타 별표규정은 관련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게재한 것임.